

# 재심소장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소명 재심청구의 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7.선고 2016재누101판결

## 재심 할 판결의 표시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재심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 재심청구원인

### 1. 재심사유

①.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②.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 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 2. 그동안 내용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기각, 대법원2000두8004 심리불속행기각.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각하, 대법원2011두113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각하, 대법원2012두1235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2재누172각하' 대법원2013두234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3재누148각하, (2013재누148 관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대법원2014무33 심리불속행기  
각)

서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169각하(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불이행), 서  
울고등법원 재심2014재누275각하, 대법원2016두70 심리불속행기각, 서  
울고등법원 재심2016재누101각하, 대법원2016두46168 기각 불복하여  
다시 재심합니다.

### 3. 맺음말

①.원고의 증거와 주장내용을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의 위  
법 부당성을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도 양심도 없이 여러  
번의 재판결과는 이유 없이 이러한 사실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반드  
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 첨부

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 4장)
1. 사본 재심소장 2부

참고: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되었기에 고등법원판결 등본생략  
1. 납부서 1통

2016년 11월 일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